

## 부속서 1

###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1. 각 당사국에 의해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계획에 따라 각각의 최혜국 실행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철폐한다.

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X \geq 20\%$	20	13	10	5	0
$15\% \leq x < 20\%$	15	10	8	5	0
$10\% \leq x < 15\%$	10	8	5	3	0
$5\% < x < 10\%$	5	5	3	0	0
$X \leq 5\%$	관세인상금지			0	0

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이하 "베트남" 이라 한다)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X \geq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leq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35\% \leq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30\% \leq x < 35\%$	30	30	25	20	15	10	0-5	0
$25\% \leq x < 30\%$	25	25	20	20	10	7	0-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leq x < 20\%$	15	15	15	10	7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8	5	0-5	0-5	0
$7\% \leq x < 10\%$	7	7	7	7	5	0-5	0-5	0
$5\% \leq x < 7\%$	5	5	5	5	5	0-5	0-5	0
$X < 5\%$	관세인상금지						0	

다. 캄보디아 왕국(이하 "캄보디아"이라 한다),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하 "라오스"이라 한다) 및 미얀마 연방(이하 "미얀마"이라 한다)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geq 60\%$	60	50	40	30	20	10	0
$40\% \leq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leq x < 40\%$	35	30	30	20	15	5	0
$30\% \leq x < 35\%$	30	30	25	20	10	5	0
$25\% \leq x < 30\%$	25	25	20	20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5	10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5	0-5	0
$5\% \leq x < 7\%$	5	5	5	5	5	0-5	0
$X < 5\%$	관세인상금지						0

\* 미얀마는 2010년까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2. 1항의 관련된 계획표에 규정된 관세율은 각 당사국이 특정된 이행연도에 해당 관세품목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율 수준을 규정한 것이며, 어느 당사국이 원한다면 어느 때라도 관세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3. 종량세의 적용을 받는 일반품목군의 관세품목들은 그러한 종량세를 제1조에 규정된 계획의 일정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0으로 인하한다.

4. 최혜국 실행관세율 0%인 일반품목군 관세품목들은 관세율 0%를 유지한다. 관세율이 0%로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관세율 0%를 유지한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어떠한 관세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

5. 1항의 관련된 일정표에 따라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인하하고/하거나 철폐하도록 하는 약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한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하거나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 가. 한국

- (1) 한국은 이 협정 발효시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70%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 (2) 한국은 200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5%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 (3) 한국은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 (1) 각 당사국은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한다.
- (2) 각 당사국은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0%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 (3) 각 당사국은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이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 (4) 각 당사국은 2012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 다. 베트남

- (1)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한다.

다.

(2)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0%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3) 베트남은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 2016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4) 베트남은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라.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1) 각 당사국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한다.

(2) 각 당사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0%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3) 각 당사국은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4) 각 당사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6. 수출국가가 일정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한다면, 그 수출국가는 어느 수입국가가 동 관세품목에 대해 이 부속서 또는 부속서 2의 관련된 계획표에 규정된 의무와 조건과 함께 동 계획표에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대로 정한 관세양허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수출국가가 그 관세품

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는 한 향유된다.

7. 각 당사국은 제5항에서 융통성을 부여받은 관세품목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8.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제5항에 따라 해당 관세품목의 관세철폐 계획과 함께 그 관세품목에 대해 당해 당사국의 의무가 개시되는 날보다 늦지 않게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2005년 12월 1일

데디 살레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상부  
지역협력국장

데디 살레 국장 귀하,

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이 협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3)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까지 그 관세율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항 (3)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대로" 란 문구에 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5년 12월 1일

라몬 카비크팅  
필리핀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제통상관계국장

카비크팅 국장 귀하,

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이 협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3)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까지 그 관세율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항 (3)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대로" 란 문구에 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5년 12월 5일, 자카르타

김한수 국장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12월 1일자 데디 살레 지역협력국장 앞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하여 언  
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이 협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3)과 관련하  
여 인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까지 그 관세율  
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  
항 (3)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대로" 란 문구에 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헤리 소에탄노토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상부  
국제무역협력 총국장  
참조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



2. 데이비드 친,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동의장

2005년 12월 2일

김한수 국장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2005년 12월 1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그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도 동 서한에 반영된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서명/

라몬 빈센트 카미크팅  
필리핀 공화국 통상부  
국제통상관계국장